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7.08.23.
개정 2014.03.12.
개정 2014.06.25.
개정 2016.11.29.
전부개정 2019.06.24.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31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생활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장애인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생활체육의 진흥정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생활체육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치구 장애인생활체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각종 장애인생활체육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10인 이내
-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소관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해당 체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본위원회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위원회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관계직원 또는 해당부문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6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준한다.

부 칙(2019.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